

	<h2 style="margin: 0;">교직원 복지규칙</h2>		규정번호	3-1-32	
			제정일자	2013.07.01	
	개정일자		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1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.

1. 전임교원(전임교원임용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원)
2. 일반직원
3. 조교
4. 전임교원임용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교원, 계약직 조교 및 계약직 직원은 제3조의 제3호, 제4호, 제6호 및 제8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.

**제3조(복지지원의 내용)** 복지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에 입학하는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등록금 지원
2. 교직원 자녀의 중·고등학교 수업료 지원
3. 교직원 보건상담실 운영
4. 교직원 본인 및 가족(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) 이천수련원 이용 지원
5. 교직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
6. 교직원 체력단련실 운영
7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
8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복지지원

**제4조(예산)** 모든 복지 지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맞춤형 복지제도)** 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 초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**제6조(기타)**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